

---

# 아동 ·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안)

---

2022. 7.



관계부처 합동

# 목 차

I. 추진 배경 .....	1
II. 현황 및 문제점 .....	2
III. 추진계획 .....	6
1. 아동·청소년 중심 개인정보 보호 원칙·체계 확립 ....	7
2.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권리 실질화 .....	8
3.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지원 .....	11
4.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	14
IV. 추진일정 .....	17

# I. 추진배경

-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자연스럽게 접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가 아동·청소년으로 성장
  -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교육·문화·여가·대인관계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음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활동이 급격히 늘어나고 영상·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에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도 증가
  - 반면, 아동·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유·노출 등 침해 위험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고 권리 행사에 미숙

## 서울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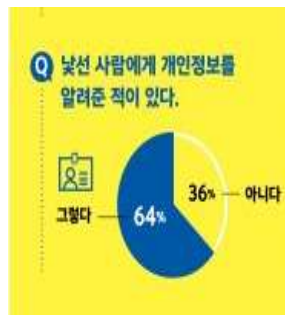
유명인 도 못매... SNS에 아이사진 "성장기록" "신중해야"

# #육아스타그램 4,092만 게시물	# #육아소통 3,829만 게시물
# #육아스타그램 39.1만 게시물	# #육아 4,333만 게시물
# #육아스타그램 6.3만 게시물	# #육아맘 2,772만 게시물

▲ 대표적인 96만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다양한 해시태그들

[ 유명인 세어런팅 논란 사례 ]

※ 서울신문('22.5.2.)



[ 청소년 64%, 인터넷에서 낯선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험 있다 ]

※ 문화일보('20.12.13)



- 또한, 아동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정보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견적 보호 뿐 아니라 역량 함양도 중요
  -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고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수적
  - 아동은 성인에 이르기까지 급격한 신체적·인지적 발달 과정을 거칠 뿐만 아니라 연령대별로 이용행태\*가 달라 차등적으로 접근할 필요
    - \* 스마트폰 앱 이용 선호도(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21) : 초등(메신저>게임>사진·영상), 중등(메신저>사진·영상>게임), 고등(메신저>사진·영상>미디어)

⇒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 마련 필요

## II. 현황 및 문제점

### 1 법·제도 현황

#### □ 해외 : 아동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 강화 추세

- **(UN)**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을 ‘디지털 환경에서 보장되어야 할 아동의 권리’ 중 하나로 보고, 이를 위해 국가가 법률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21.3월)
  - ※ 아동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열람권, 정정·삭제권, 철회권 등의 통제권 보장 권고
- **(EU)** GDPR에서 16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자 동의 및 잊힐 권리\*\*,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의 통지 의무 규정(‘18.5월)
  - \* 개별 회원국별로 기준 연령을 16세에서 13세까지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 처리자의 삭제의무, 해당 개인정보의 링크·사본 등을 처리하는 타 처리자에 대한 정보주체의 삭제 요청 사실 고지의무, 잊힐 권리 행사의 제한사유 등 규정
- **(영국)** 「개인정보보호법」(Data Privacy Act ; DPA) 제123조에 근거하여 ‘연령 적합 설계 규약’(Age Appropriate Design code ; AADC) 제정(‘20.1월)
  - 아동(0~17세)의 연령을 총 5개 단계로 나누어 연령별 보호 조치 규정
    - ※ (DPA) 아동이 접근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정보위원회(CO)의 연령적합설계규약 마련 의무 규정
    - (AADC) 아동 최선의 이익 고려, 연령 범위에 따른 투명성 준수 방안,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기본값 설정, 자녀 보호기능 설정 시 준수사항 등 15가지 원칙 표준 제시
- **(미국\*)**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 COPPA)에서 13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처리 시 보호자 고지, 명확한 처리방침 게시 등 규정(‘11.9월)
  - ※ 미 연방 상원에서 아동 연령 상향(16세), 삭제버튼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발의(‘21.5월)
  - 일부 주법(캘리포니아, CBPC)에서는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잊힐 권리 규정
    -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에 관한 법을 별도 제정
-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민감정보로 취급하고 처리 시 보호자 동의 및 별도 처리규칙 마련 의무 부과(‘21.11월)

□ **국내 :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법」 등에 규정**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 동의, 동의 확인 의무 규정(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법)
- 또한 개인정보 관련 고지 시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 사용 의무, 정부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의무 등 규정(보호법)

**참고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관련 해외 동향 및 처분 사례**

**1. 주요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변화**

- 주요 글로벌 기업도 전세계적인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규범 강화 추세에 따라 아동·청소년 이용자에 대한 자체적인 보호정책 마련 노력

- (구글) 18세 미만 청소년 보호 정책 발표(21.8월)
  - 18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보호자 요청 시 해당 이용자의 이미지를 검색결과에서 삭제하는 기능 제공, 맞춤형 광고 금지, 아동용 동영상(유튜브키즈 등)을 시청하는 이용자의 데이터 수집·사용 제한 등
- (메타) 18세 미만 청소년 보호조치 발표(21.7월)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18세 미만 이용자의 활동 기록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광고 금지, 18세 미만 이용자가 인스타그램 가입 시 프로필 '비공개' 자동 설정 등
- (틱톡) 16세 미만의 경우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 및 영상 '전체공개' 설정 비활성화, 13~15세 이용자가 업로드한 영상의 다운로드 제한 등 연령별 차등 보호 설정

**2.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관련 해외 주요 처분 사례**

구분	대상	사유	처분 내용
미국	틱톡 (19.2월)	• 부모의 동의 없이 13세 미만 아동의 이미지, 음성, 위치정보 등 수집, 부모의 삭제 요구에 불응	과징금 570만 달러
	유튜브 (19.9월)	• 부모에 대한 고지와 동의절차 없이 아동의 영구 식별자(persistent identifiers) 수집	과징금 1억7,000만 달러
네덜란드	틱톡 (21.7월)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영어로만 제공(네덜란드어 미제공), 미성년자에 대한 명확·충분한 고지의무 불이행	과징금 75만 유로
스페인	민간학원 (21.3월)	• 외국어 학원 교실에서 15세 미성년자의 사진을 부모 동의 없이 촬영하고 위챗에 공유	과징금 3,000 유로
벨기에	공공기관 (20.6월)	• 교육위원회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처리	과징금 23,585 유로

## □ 아동·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미비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 법정대리인 체도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어,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
  - 성인에 비해 개인정보 권리 행사가 미숙한 청소년에 대한 고려 부족
    - ※ 아동 규율 범위 : (EU) 16세 미만, (영국) 18세 미만, (미국) 13세→16세로 상향 추진 중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없고, 개인정보 중심 기본설계 (Privacy by Design)를 반영한 연령대별 규율체계 미흡

**개선방향**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아동·청소년 중심 개인정보 보호체계 마련 필요

## □ 아동·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 '권리' 보장 미흡

-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동·청소년의 특성상 장기간·대규모 개인정보가 축적되어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나,
  - 개인정보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미흡하고 권리 행사 한계
    - \* 잊힐 권리, 프로파일링 시 안전조치 사항, 개인정보 관련 내용 알림제도 등
- 현행 법은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제도 등 실행 수단이 없어 실효성 미흡

7. 제7차: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 선택은 다수의 개인정보 항목을 적어낸다.

가. 민원사유 처리

① 필수정보: 후대연락번호, 이름

② 선택정보: 필수소, 이메일

나. 서비스 제공

① 필수정보: 필수소, 생년월일, 성별, 후대연락번호, 이름, 은행계좌정보

② 선택정보: 이메일

다. 개인정보상호

① 선택 내 일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

8. 개인정보의 폐기: 선택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

정폐를 적기한다. 폐기의 일시, 기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파기일시: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

류) 내부 발송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 후 즉시 파기

종결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거나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나.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

후 30일 이내,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필요로 하는 기간을 제외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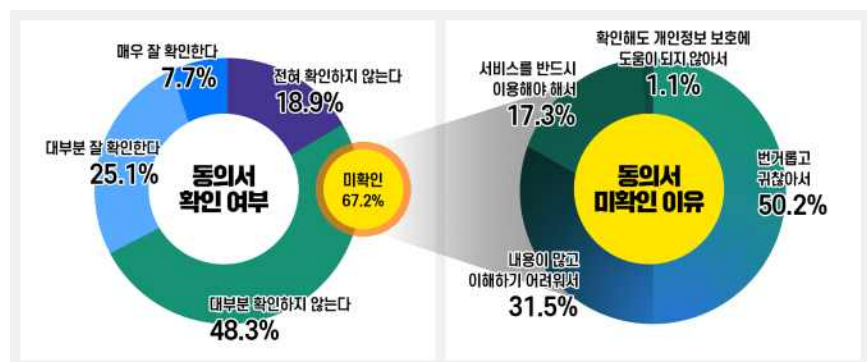
이후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다. 파기방법

① 전자의 폐기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한다.

②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한다.

[ 일반 처리방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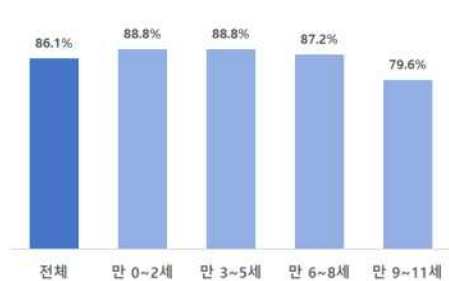
[ 청소년의 동의서 확인 여부 및 미확인 이유 ]

※ 2021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

**개선방향**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실질적 권리 강화 및 행사 지원 필요

## □ 개인정보 주권 행사를 위한 교육 및 인식 부족

- 아동·청소년 대다수가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은 인지(92.8%)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노력 부족\*
  - **획일적 교육, 참여형 콘텐츠 부족으로 교육 참여도 저조(36.5%)**
- \*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노력('21년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 : 앱 설치 시 접근 권한 내용 확인(23.3%), 처리방침 확인(15.7%) 등
- 아동·청소년의 보호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도 다수 발생
  - **보호자가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아동의 사진·정보 등을 SNS 등에 공유(세어런팅)등 자녀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존중 부족**



[ SNS 상 자녀 사진·영상 업로드 경험 ]



[ 세어런팅 사례(예시) ]

※ 세이브더칠드런(2021년)

**개선방향**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 교육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통한 역량 강화 필요

## □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범국가적 거버넌스 부재

-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는 게임, SNS, 동영상 시청 등 온라인에서 광범위하게 처리되고 있어 기업의 자율보호 활동이 필수적이나,
  - 그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및 구체적인 실천방법 등에 대한 민·관 간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협력체계 부재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는 교육·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주관 부처와 관계부처·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 범국가 차원의 추진체계 부재로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추진력 미흡

**개선방향** 민관 협력 기반의 아동·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 환경 조성 필요

### Ⅲ. 추진계획 : 추진방향 및 중점과제

#### 목표

##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주권 강화

#### 추진방향

- 1 아동·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에서 개인정보의 '주체'로 인식 전환
- 2 정보주체로서 권리·역량 강화 및 민·관 협력 기반 보호 환경 조성

#### 추진과제

중점과제	세부 추진과제
보호 원칙·체계 확립	1.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2. 아동·청소년 보호 대상 확대
권리 실질화	3. 아동·청소년 권리 강화 4. 권리 행사 지원
역량 강화 지원	5. 개인정보 교육 확대 6.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보호 환경 조성	7. 민·관 협력 기반 자율보호 확대 8. 안전한 온라인 이용 환경 조성 9. 범국가적 이행 관리체계 구축



# 1

## 아동·청소년 중심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체계 확립

❖ 아동·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 ①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 **(기본 원칙 정립)** 아동·청소년 특성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기본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중심 보호체계’ 확립

원칙	주요 내용
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존중	• 자신에 관한 정보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주체로서 아동·청소년에 대해 존중
② 아동·청소년 최선의 이익 고려	•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모든 활동에서 어떤 것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에 최선인지를 고려(UN 아동권리협약 제3조)
③ 권리 실현을 위한 적극적 지원	•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개인정보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및 권리 행사 지원
④ 연령대별 특성 고려	• 연령대별 아동·청소년의 역량과 이용행태를 고려하여 그 특성에 맞는 보호조치 설계
⑤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반영	•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서비스·기기 등의 기획·제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 적용

### ② 아동·청소년 보호 대상 확대

- **(보호 범위 확대)** 현행법상 보호 대상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또는 만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되, 연령대별 보호 내용을 차등화\*하여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권리 신장

- SNS 등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이 활발한 만 14세 이상 청소년까지 규율 범위를 확대하여 권리 보호 사각지대 해소

\* (14세 미만 아동) 법정대리인 동의, 아동용 처리방침 공개 의무, 맞춤형 광고 제한 등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잊힐 권리, 개인정보 알림 확대, 프로파일링 제한 등 안전조치

- **(연령 확인 의무 도입)** 아동·청소년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적절한 방법으로 연령을 확인하도록 명시

- √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전달 방법이 시·청각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 √ 앱·웹사이트에 등장하는 모델·캐릭터 등이 아동 지향적인 경우
- √ 아동·청소년이 접근 가능하고 이용하는 서비스(SNS, 메신저, 게임, 포털 등)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권리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쉽게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3 아동·청소년 권리 강화

- **(디지털 잊힐 권리 도입)**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법제화\*('24년)
- 본인이 올린 게시물의 삭제(또는 블라인드)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우선 실시('23년), 삭제 대상 게시물 확대(본인→제3자, '24년)
  - \* 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과 제3자의 법익(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을 고려하여 권리 행사 요건 및 제한사유(범죄수사, 법원 재판 진행, 법적 의무 준수) 규정

구분	잊힐 권리 지원 대상 게시물 유형(안)
자기 게시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게시한 글·사진·영상 등</li> <li>• 정보주체가 게시한 글을 제3자가 공유(링크, 복제 등)한 경우</li> </ul>
제3자 게시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청소년에 관한 글·사진·영상 등을 올린 경우(셰어런팅)</li> <li>• 제3자가 아동·청소년에 관한 비난·비방 등 부정적 게시물을 올린 경우(사이버 폭력)</li> </ul>

- 온라인 게시물의 개인정보 탐지·삭제 기술 개발(R&D) 추진('23년)
- **(법정대리인 동의제도 개선)** 아동의 법정대리인 부재 시 동의 대행 제도 도입 및 부적절한 법정대리인의 권리 행사 제한방안 마련
- **(대행)** 법정대리인 부재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가 어려워 교육·행정 등 아동의 일상생활이 제한되는 경우 실질적 보호자(학교, 지자체, 위탁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개선
- \* (예시) 도서관 회원가입, 학교 원격수업을 위한 홈페이지·앱 가입 시 학교장 동의, 병원 진료를 위한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위탁부모의 동의 허용 등
- **(제한)** 법정대리인이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아동학대자, 연락두절 등) 권리 행사 제한\*
- \* 부적절한 법정대리인의 권리 제한 시 실질적 보호자의 권리 대행 허용

#### 4 권리 행사 지원

- **(아동용 처리방침 공개 및 평가제 도입)** 만 14세 미만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한 ‘아동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확산
  - **(표준안)** 어휘·문장 수준 등을 검증\*한 아동용 처리방침 표준안 마련·배포 및 그림·영상·대화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한 우수사례 확산(‘22년)
  - \* 국어교육 전문기관의 언어 수준 검증을 거친 아동용 처리방침 표준안 마련



[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아동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사례(카카오, 네이버) ]

- **(평가제 도입)**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아동용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공토록 하고, 평가제를 통해 준수여부 확인(‘24년)
- **(알림제도 확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이용·제공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맞춤형 알림 제도 확대(~’24년)
  - 실제 이용·제공내역,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 시 출처 알림 등 의무화

- **(개인정보 처리 표시제 확대)**  
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 포털, 인터넷 강의 사이트 등 자율규제단체 중심 보급·확산(‘22년~)



[ 개인정보 처리 표시제 ]

- **(침해신고 신속 대응)** 개인정보 침해 시 쉽고 빠르게 상담·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침해신고센터\* 내 아동 전용 페이지 신설\*\*(‘23년)
  - \* 개인정보 침해 시 침해사실을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창구(privacy.kisa.kr)
  - \*\* **(현행)** 일반인용, 외국인용 → **(개선)** 아동·청소년용 페이지 추가

< 아동·청소년 권리 실질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계획 >

1. 「**가칭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24년)

- 특별한 보호 대상인 **아동·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권리를 강화하는 「**가칭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구분	현행	개선(안)	
		14세 미만	14세 이상 18세 미만
기본원칙 정립	-	- 아동 최선의 이익, 권리 실현 지원, 연령대별 특성 고려, 개인정보 중심 설계 원칙 등	
보호범위 확대	14세 미만	- 18세 미만까지 확대 규정	
법정대리인 동의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행사	- 본인 및 법정대리인 행사 - 제3자 대행, 권리 제한 등	- 본인 행사
권리 강화·지원	-	- 아동용 처리방침 공개 - 맞춤형 광고 제한	
		- 잊힐권리 명문화, 지원 근거 - 개인정보 실제 이용·제공 내역, 수집출처 등 알림 - 프로파일링 시 안전조치 등	
교육 등 지원	-	- 교육, 컨설팅 등 역량 강화 지원 근거 마련	

2.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22년)

- 법 제정에 앞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 제정·안내**

단계	주요 내용
기획·설계	√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에 따른 서비스 기획 (적절한 연령 확인, 높은 수준 기본값 설정 등)
수집·이용·제공	√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법정대리인 동의 √ 부적절한 네티지 사용 기술 사용 제한
보관·파기	√ 수집한 아동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 √ 수집한 법정대리인 정보는 동의 확인 후 파기
권리 보장	√ 명확하고 알기 쉬운 개인정보 관련 사항 안내·고지 √ 개인정보 정정·삭제권 등 권리 행사 적극적 지원

### 3

##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지원

- ❖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인식 제고를 통해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5 개인정보 교육 확대

-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확대) 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의 개인 정보 교육을 확대하고, 아동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개발
- ① (학교 현장교육 강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정보수업 시수 확대 및 디지털 소양 함양 강화 등에 따라 개인정보 교육 내실화('22.하, 고시)
  - '실과'(초등), '정보'(중·고등) 등 정보교과를 중심으로 디지털 소양으로서 관련 과목의 교육과정 각론에 '개인정보 보호' 반영 추진
  - ※ 정보수업 교육시수 확대 ((초등) 34시간, (중등) 68시간 이상 등), 과목 신설(고등), 범교과 학습주제(창의적체험) 등에 포함
- ② (찾아가는 교육 확대) 개인정보 보호 교육 여건이 열악한 곳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 찾아가는 교육 확대
  - 도서·산간 등 교육 취약 지역 중심 현장 교육 확대('21년106회→'22년130회→'27년200회)
  - 청소년 컴퓨터 등 대상 뉴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실시 추진(여가부)
- ③ (교육 콘텐츠 개발) 실감형 콘텐츠 개발 및 온라인 교육환경 개선('22년~)
  - 게임 등 학습자 맞춤형 콘텐츠 개발·보급, 개인정보 교육·가상체험 등을 제공하는 메타버스 교육 환경 구현으로 참여도·만족도 제고
  - ※ 현행 초·중·고등학생용(3종), 미취학 아동용(1종)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 실감교육 강화사업\*('19년~)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실감콘텐츠 개발 및 찾아가는 초·중·고 체험학교 운영(과기정통부, '23년 ~)
  - \* 진로체험 및 교과연계 콘텐츠 총 83종 개발, 총 55개 학교 1,200명 체험학교 참여

- **(보호자 교육 확대)** 부모 의존도가 특히 높은 아동 시기 특성을 고려, 보호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및 경각심 고취('22년~)
  - 어린이집·유치원, 각급 학교 중심 가정통신문, 교내 학부모 교육 등 확대

[ 보호자 대상 아동 연령대별 교육 내용(예시) ]

구분	주요 내용
유아기 (만3세~만6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자의 SNS 등에 아동의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셰어런팅 자제</li> <li>• 아동이 이용하는 기기나 서비스의 기능·옵션을 아동 연령에 맞게 설정</li> </ul>
초등학교 저학년 (만7세~만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과 함께 인터넷 사용시간, 장소 등에 대한 규칙 정하기</li> <li>• 개인정보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li> </ul>
초등학교 고학년 (만10세~만12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의 안전한 사용에 대해 아동에게 알려주고 대화하기</li> <li>• 개인정보 침해 시 대처 방법 교육</li> </ul>
중·고등학생 (만13세~만18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개인정보 관련 내용 확인하는 방법 교육</li> <li>•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개인정보 권리 및 행사 방법 등 교육</li> </ul>

- 보호자의 셰어런팅으로 인한 자녀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 및 위험성, 자녀의 의사 존중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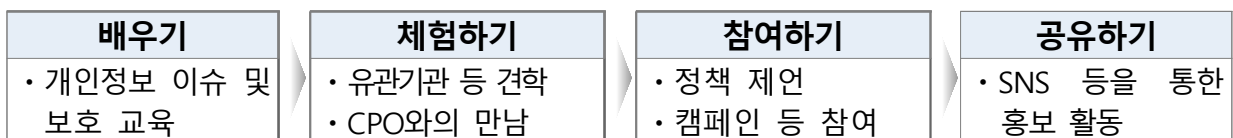
[ 셰어런팅 방지 교육 동영상(예시) ]



- **(교사 등 교육 확대)** 교원·공무원 연수기관 등과 협업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사·교육공무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강화

**6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리더 양성)** 청소년이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또래집단 내 개인정보 보호 전파자로서 역할 수행('22년~)
  - 개인정보 보호 활동 체험 및 교육 등 지원, 실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
  - \* ('22년) 서울 소재 20개교 대상 시범 실시 → ('23년~) 권역별 대상 학교 및 인원 확대



- **(실천문화 확산)** 아동·청소년 대상 특별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홍보 등으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22년~)
    - 초·중·고 대상 '개인정보 보호 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및 다양한 방식(동영상, 포스터)의 아이디어 선정·홍보(교육부)
    - 유관 기관·단체\*와 협업하여 연령대별 교육·홍보자료 제작·배포
-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아동권리보장원, 학부모 단체 등



[ 개인정보 관련 콘텐츠 공동 제작·홍보 예시(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 매년 개인정보 인식주간 운영 시 '아동·청소년' 테마 운영\*, 주요 주제별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을 환기하는 홍보·캠페인 등 실시('22년~)
  - \* 유관부처, 민간기업 등과 함께 '내 정보 지킴이(온라인), 학교 방문 캠페인(오프라인) 등 실시
- **(아동 권리 인식 강화)** '아동권리포럼', '아동총회' 등 아동 참여의 장(場) 마련을 통해 개인정보 권리 등 아동 권리에 관한 홍보 강화(복지부)
  -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및 보호 등 전문가와 아동이 함께하는 정기적 '아동권리포럼'을 개최('22.7.~9., 매년)하여 아동권리 인식 강화 추진
  - '대한민국 아동총회'\* 정례적 개최를 통해 개인정보 권리 등 아동 권리에 관한 아동 스스로의 제도개선 참여의 장 마련

\* 아동이 직접 아동 관련 사회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정책 건의사항을 도출하는 참여의 장('04년~)
- **(통계조사 확대)** 개인정보 보호 통계조사의 범위를 아동까지 넓히고, 설문 내용을 확대하여 아동·청소년 정책·제도 등에 반영('22년~)

구분	현행
대상	• 만 12세 이상 만 19세 이하
설문 내용	• 개인정보 제공 목적, 교육여부 등

⇒

개선
• 만 9세 이상 만 19세 미만
• 법정대리인 동의제도 인지도, 열람등 요구권 행사여부, 인식 등 추가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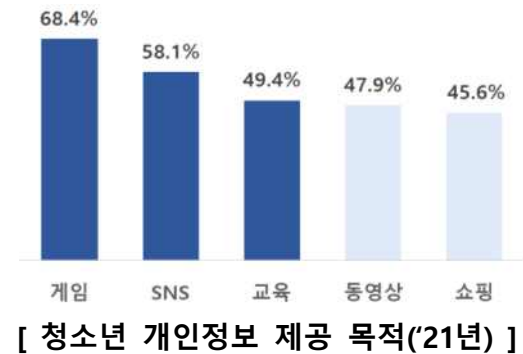
#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3대 분야(게임, SNS, 교육)를 중심으로 **자율 보호를 확대**하고 **안전한 온라인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7 민·관 협력 기반 자율보호 확대

### ○ (주요 3대 분야 안전 환경 조성)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3대 분야(게임, SNS, 교육)를 중심으로 **앱·웹사이트 이용 실태조사\*** 및 분야별 특성에 맞는 **안전 환경 조성 추진**('22년~)



\* 게임 사이트 회원가입 방식 및 개인정보 수집 항목, 아동의 부모 계정 이용률 등

### ① (게임·오락)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노출이 많은 게임 채팅 공간과 메타버스 플랫폼 내 게임 등 신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게임 채팅 공간에서 개인정보 관련 내용 입력 시 이를 자동 차단\* 하여 안전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

\*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와 협력방안(MOU) : 개인정보·인권 관련 '말뭉치DB'(17만건) 구축하고 넥슨넷마블카카오 등 게임 이용 시 개인정보 입력 자동 차단, 공동 홍보 등

- 아동·청소년의 얼굴·음성 등 생체정보, 대화내용 등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은 메타버스 내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제도개선 추진

※ 메타버스 이용자 연령대 조사결과(닐슨코리아, '21년)

- (제페토) 7~12세(50.4%), 13~18세(20.6%) / (로블록스) 7~12세(49.4%), 13~18세(12.9%)

### ② (SNS)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를 반영한 서비스 운영 권장

- SNS 계정 비공개, 영상·사진 등 업로드 시 '전체공개'를 기본값으로 설정하지 않는 등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기본값 설정 권장



- 소셜로그인 기능을 제공하는 업체는 이용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도록 명확히 안내

※ 만 14세 미만 아동 이용불가 사이트는 제3자 제공이 사전 차단되도록 기본 설정 권고

- ③ **(교육·학습) 학교·학원·인터넷강의 등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교육 현장 특성에 맞는 보호 체계 확립**
- 원격수업, 학교 홈페이지 등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 관련 사례집 발간·배포(교육부)

< 교육 관련 개인정보 보호 사례 >

- √ 학교 홈페이지 내 단체사진 게시, 방과 후 프로그램 등 신청 시 동의여부 및 방법
- √ 모바일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위한 앱 서비스 운영 시 개인정보 위탁 방법
- √ 체험학습을 위해 여행사 계약 후 단체보험 가입 시 학생 개인정보 처리 방법 등

- 학원·교습소 대상 개인정보 처리방침 표준안 배포·확산 및 교육·홍보
- **(자율보호 확대) 기업의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 추진(22년~)**
- 아동·청소년 이용도가 높은 분야(게임, 온라인 포털, 학원 등)의 자율 규제단체 지정 확대 및 협업·MOU 등 추진
-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기준에 아동이 알기 쉬운 언어 사용 반영\* 및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권고·지원
- \* **(현행)**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 **(개선)** 알기 쉬운 언어 사용 여부(§39의3⑤) 추가

- **(제조사 책임 강화) 카메라·마이크 등을 통해 아동의 정보를 수집·전송가능한 디지털 기기\* 제조사의 책임 강화(23년~)**
- \* 말하는 인형, 피트니스 밴드, 사진촬영·녹음이 가능한 장난감 컴퓨터, AI 스피커 등
- 기획·설계 단계의 개인정보 보호 요소 반영여부를 **인증하는 제도\*** 도입
- \*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도입방안' 연구(22.5~9.)를 바탕으로 우선 적용방안 마련

< 아동용 완구 제조 시 권장사항(예시) >

- √ 사용 시작 전 아동·보호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안내
- √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경우 다양한 방법(음성, 불빛)으로 이용자에게 고지
- √ 아동의 개인정보 전송·저장 시 암호화, 안전한 파기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반영

## 8 안전한 온라인 이용 환경 조성

- **(맞춤형 광고 제한)** 서비스 이용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임을 알고 있는 경우 상업용 맞춤형 광고 제공 목적의 행태정보 수집·활용 제한

Giving kids and teens a safer experience online



New advertising changes

We'll be expanding safeguards to prevent age-sensitive ad categories from being shown to teens, and we will block ad targeting based on the age, gender, or interests of people under 18. We'll start rolling out these updates across our products globally over the coming months. Our goal is to ensure we're providing additional protections and delivering age-appropriate experiences for ads on Google.

- 제한 권고('22년, 가이드라인), 만 14세 미만 아동 대상 맞춤형 광고 제한 근거 마련(~'24년) [ 아동 맞춤형 광고 제한 사례(구글) ]
- ※ 비로그인 상태의 이용자에게 성인 대상 광고를 내보내지 않기 위해 수집한 행태 정보를 바탕으로 만 14세 미만 아동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

- **(불법거래 방지)** 인터넷 상 ID 판매(SNS·게임 등의 계정) 등 불법거래 게시물을 신속 탐지·삭제하여 아동·청소년의 접근 방지('22년)
- 불법거래 키워드 검색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콘텐츠가 검색결과에 도출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도모
- ※ (현행) 일반 웹 대상 탐지 → (개선) 다크웹·딥웹 등으로 범위 확대 및 기능 고도화
- **(법 위반 제재 강화)**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처리 등 점검 및 법 위반 사업자 엄정 처분('22년~)

< 주요 위반사례 >

- √ 아동의 개인정보(연령 포함)를 수집하면서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두지 않은 경우
- √ 이용자의 연령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 9 범국가적 이행 관리체계 구축

- **(협의회 구성·운영)** 정부·민간이 함께하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협의회' 구성·운영으로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력 확보
- (구성)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위원장), 교육·복지·여가·문체·과기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 국장급, 서울시 교육청, 관련 기업 및 전문가 등
- (기능) ①과제별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 ②민·관 협업과제 발굴·추진, ③공동 홍보 등 ※ 반기별 정기 개최, 필요 시 수시 개최

## IV. 추진일정

구 분	과 제 명	추진기관	시기	조치사항
<b>1.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원칙·체계 확립</b>				
원칙 정립	• 기본 원칙 정립	개인정보위	'24	법률제·개정
보호대상 확대	• 보호 대상 확대, 연령 확인 의무	개인정보위	'24	법률제·개정
<b>2.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권리 실질화</b>				
권리 강화	• 디지털 잊힐 권리 도입	개인정보위	'23~	예산 확보 필요
	• 법정대리인 동의제도 개선	개인정보위	'24	법률제·개정
행사 지원	• 알림제도 확대, 아동용 처리방침 의무화	개인정보위	'24	법률제·개정
	• 아동용 침해신고센터 마련	개인정보위	'23	
<b>3. 개인정보 역량 강화 지원</b>				
교육 확대	• 교육과정 내 개인정보 내용 확대	개인정보위, 교육부	'22~	
	• 찾아가는 교육 및 교육 콘텐츠 개발	개인정보위, 여가부	'22~	예산 확보 필요
	• 보호자 및 교사 대상 교육 확대	개인정보위, 복지부	'23~	
인식 제고	•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리더 양성	개인정보위, 서울시 교육청	'22하~	
	• 공모전, 홍보·캠페인 등 인식 제고	개인정보위, 교육부, 복지부, 문체부 등	'22하~	
	• 개인정보 통계 조사 대상 확대	개인정보위	'22~	
<b>4.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b>				
민·관협력 자율보호 확대	• 주요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위, 교육부, 관련 기관 등	'22.6~	가이드라인
	• 자율규제단체 등 자율보호 확대	개인정보위	'22~	
	• 제조사 책임 강화	개인정보위	'23~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	• 맞춤형 광고 제한	개인정보위	'24	법률제·개정
	• 불법거래 방지	개인정보위	'22~	예산 확보 필요
	• 법 위반 단속 강화	개인정보위, 관계부처	'22~	
이행체계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정책 협의회 구성	개인정보위, 관계부처, 관련 기관 등	'22~	